

공 사 시 방 서

[일반시방]

제 1 장 (일반사항)

본 시방서는 첫마을3단지 소방시설의 자체 검사에서 지적된 항목에 대해 적기에 완전하게 보수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해야 할 사항에 대해 규정한다. 공사의 시작과 준공은 착공계와 준공계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 2 조 (적용 및 용어 정의)

본 시방서는 첫마을 3단지 소방시설 보수공사에 적용하며 필요 시 계약의 일부가 된다.

1. 발주자라 함은 첫마을3단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또는 관리소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자를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 3 조 (공사의 범위)

1. 소방시설 자체검사에서 지적된 항목에 대해 보수공사를 시행한다.
 - 보수항목 목록 참조
2. 계약상대자는 보수공사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를 제공하여 본 공사를 시행한다.

제 4 조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30일간이며, 자연재해로 인한 지연 발생 시 협의하여 공기 연장이 가능하다.

제 5 조 (계약 의무 규정)

1. 계약상대자는 성실과 신의, 그리고 기술과 성의를 다하여 시방서 조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소방시설 보수를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하도록 한다 .
2. 본 시방서에 규정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국가건설기준(KCS)에 통합되어 있는 소방공사표준시방서에 따른다.

제 6 조 (하자보증기간)

하자보증기간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6조(하자보수 대상 소방시설과 하자보수 보증기간)에 따른 소방시설과 소방시설별 하자보수 보증기간은 다음의 각 호를 적용한다.

1. 비상경보설비, 비상방송설비, 피난기구, 유도등, 비상조명등 및 무선통신보조설비: 2년
2. 자동소화장치,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등, 물분무등소화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화재알림설비, 소화용수설비 및 소화활동설비(무선통신보조설비는 제외한다): 3년

제 7 조 (보수 부품 등 자재 공급)

1.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KS 인증제품 이상이어야 한다.
2. 모든 제품은 소방청(KFI)의 인증을 득하고, 소방제품 국가검증 합격표시인 KC 인증 받은 국산 제품으로 시공한다
3. 감지기류는 방수형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감지기 특성 상 방수형이 없는 종류는 비방수형을 사용할 수 있다.

제 8 조 (손해배상 및 책임)

발주자의 시설물 내에서 보수공사 중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인해 인적, 물적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 및 책임을 진다.

제 9 조 (계약의 해지)

계약 계약상대자가 성실한 의무로 최선을 다하는 약정사항을 위반하였거나 위해를 끼친경우 해약할 수 있다.

제 10 조 (하도급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명시된 일체의 업무를 발주자의 사전 동의 없이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 부라도 제 3 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 ,승계 ,하도급 ,담보 및 위임 등을 할 수 없다 .

제 11 조 (안전관리)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안전사고가 발행되지 않도록 철저한 예방은 물론 제반 안전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 12 조 (안전교육)

1. 계약상대자는 보수요원에게 안전관리 및 작업요령을 작업 전에 숙지시켜 안전사고를 방지토록 한다 .
2. 계약상대자는 보수요원이 안전한 상태에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안전모 및 안전화 등을 제공 하고 특히 고소작업에도 안전사고가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도록 한다.

제 13 조 (공사시방서의 해석)

1. 본 공사시방서에서의 문구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 상호 협의를 통해 결정하고 합의가 되지 않 은 사항은 발주자의 해석에 따른다 .
2. 본 계약서 상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본 시방서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시는 발주자의 유권해석에 따른다 .

제 14 조 (기타)

발주자는 계약서상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이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주자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

[특기시방]

제 1 조 (준공 기준)

공사 완료 후 발주자 입회하에 작동 기능 점검 및 연동시험을 실시하여 장상상태를 확인함을 기준으로 한다.

제 2 조 (보수공사 후 자료 제공)

1. 보수공사의 범위는 발주자가 제공하는 184개 항목에 대해 공사를 시행 후, 각 항목이 올바르게 작동하는지 확인해 주시고, 우리단지 전체 소방시스템의 정상상태를 기준(표준)으로 보아 이번 보수 항목 이외의 작동이 되지 않는 사항이 있으면 이를 모두 발굴하여 발주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별도 재점검이 아니라 공사를 하던 중 파악된 작동 기능 중 작동 불능, 추가로 보수가 필요한 사항을 기록해 나가면서 작성된 자료 제공)
2. 보완공사를 하는 대상 항목에 대해, 공사 완료후 10개로 대별하는 항목에 대해, 문제가 발생한 이유나 배경(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는지와)을 매우 간단하게 1~2줄 정도로 기술하여 주시고 조치한 방법에 대해 간단히 1~2줄로 기술 요망.
 - 세부 항목별로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큰 단위의 카테고리 별로 간략히 작성

카테고리	발생 원인 /이유/배경	조치한 사항	비 고
1			
2			
.			
9			
10			

제 3 조 (선로 작업)

1. 교체 또는 수리된 중계기, 감지기, 발신기 회로와 주수신기 간의 고유주소(address)에 대한 정상 설정과 정상 연동 여부에 특히 주의를 기울이도록 한다.
2. 감지기 등의 교체 시 회로 작업이 있는 경우는, 천장구조에 적합한 규격으로 교체하며, 배선 접속부는 슬립 압착 및 절연 테이프, 수축 튜브 마감 등으로 처리한다.

제 4 조 (공사결과물 제출)

1. 공사 결과물은, '공사 전'과 '공사 후'로 사진을 찍어 사진대지를 2부 작성하여 제출한다.
2. 만약 회로의 변경이 있는 경우 해당부위의 도면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제12조 공사범위 외 발견된 이상사항

제 5 조 (공사 중 상황보고)

1. 공사 중 당초 공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소방시설의 이상 또는 불량을 발견한 경우 수급인은 이를 임의로 보수하거나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긴급한 경우와 방치할 경우 안전사고 또는 소방시설 기능 상실의 우려가 있는 긴급한 사항은 발주자에게 알리고 협의하도록 한다. 보고하도록 한다.
2. 1항이 아닌 경우, 특기시방 제 2조에 따라 조치한다. 끝.